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허가 요건에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 추가〉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2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인허가 요건에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 추가 (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9.

다. 회 부 일 : 2026.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인허가 요건에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 추가(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 제2항)

현행	개정안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제8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u>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u>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5항) ○ 지급절차 등(제15조제2항) 재경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1호) - <u>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제8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u>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u>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5항) ○ 지급절차 등(제15조제2항)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1호) - <u>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u>

개정안은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인가 요건과, ②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수령 허가요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내외 법령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같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재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UN 헌장 제7장 제39조(UN Charter Chapter VII Article 39)¹⁾에서는 제재요건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를 규정하고 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해석함에 있어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²⁾

1) [UN 헌장] **Article 39** The Security Council sha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s, do decide wha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1 and 42,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년, 2009년 :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751호(1992년) 및 제1907호(2009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우리나라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미합중국 대통령명령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명 등을 기준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재정경제부 고시)」에 열거하여 적용 중에 있음.

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7.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 · 핵 ·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제1747호, 제1803호, 제1929호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 :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 : 예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5.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431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 ② 제1항의 금융제재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환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UN의 요건을 감안하여 ‘보편적 인권’에 대한 내용을 제재 근거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로 규정하고 있음.³⁾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현행 규범으로도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제재 근거로서 충분하고, 법 개정으로 과거에 제재가 어렵던 자에 대한 신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둘째, 「외국환거래법」 등 개별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식은 규율체계의 분절성과 한계를 초래할 수 있는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EU의 인권 제재 제도(EU Global Human Rights Sanction Regime)와 같이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기준·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통합적 입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중대한 인

3) 일본 「외국환및외국무역관리법」 제16조 (영문 번역)

Article 16 (Restrictions on Payments, etc.)

(1) When it is deemed necessary in order to faithfully implement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y Japan, or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 to maintain th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the competent minister may require a resident or non-resident who intends to make a payment to or receive a payment from a foreign country to obtain permiss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 Cabinet Order.

(2) The competent minister ma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purposes set forth in the preceding paragraph, impose necessary conditions on such permission or may refuse to grant such permission.

권침해를 한 외국인을 입국금지하려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⁴⁾

이처럼 「외국환거래법」 등 개별 경제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규율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개별법의 주된 목적과도 일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명시적으로 통합된 규범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2016년 제정)은 인권침해 또는 대규모 부패에 개입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입국 금지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고,

EU의 인권 제재 제도(2020년 제정) 또한 EU 역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4) 의안번호 2217070,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u>유지</u>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 ----- ----- ----- ----- <u>유지 및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u>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생략)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 <u>평화 및 안전을 유지</u>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u>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편적 인권을 보호·증진</u> ----- ----- -----

문 의 처
02)6788-5148